

『희망저축계좌 II』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『희망저축계좌II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, 『적립식예금 약관』, 관련 법령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(자산형성지원)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(자산형성의 대상 등)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(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)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『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(이하 "운영 지침"이라 함)』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'운영지침'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대상입니다.

제 3 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종류는 자유적립식으로 합니다.

제 4 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.

제 5 조 가입금액 및 적립방법

- ①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(만원단위)입니다.
 - ② 이 예금은 **당월 인정기간**^(주1) 내 최소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하(만원단위)로 입금이 가능합니다
- (주1) **당월(적립월) 인정기간**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~당월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

제 6 조 정부지원금

- ①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이 있으며, 지원내용(지원조건, 지원금액, 지급방법 등)은 보건복지부 『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(운영지침)』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② 정부지원금은 이 예금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.

제 7 조 적립중지

- ① 이 예금 가입 후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 승인 통지한 경우, 적립금은 입금제한 등록됩니다.
- ② 적립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이 미지원됩니다.

제 8 조 이자 지급방법

-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9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. 단,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 하여도 본항을 적용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 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-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 조 ①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④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, 은행은 제①항에 의한 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.

제 9조 우대금리

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최대 연 2.5%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①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 단,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우 대 항 목	내 용
급여 및 주거라이체 (연 1.0%)	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,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 ^(주1) (또는 가맹점대금 입금) 및 주거라이체 ^(주2)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(월 1회 인정) ※ 1회차 인정요건 : 급여입금 (또는 가맹점대금 입금) + 주거라이체 ※ 예시 ('22년 4월) 급여 입금 + 아파트 관리비 출금: 1회차 인정 ('22년 5월) 가맹점대금 입금 + 신용(체크)카드 결제대금 출금: 1회차 인정 ('22년 7월) 급여 미입금 + 공과금 출금: 1회차 미인정
주택청약종합저축 (연 1.0%)	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①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: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기준 당행 '주택청약종합저축' 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②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: 이 예금 가입일까지 '하나원큐(스마트폰뱅킹)'를 통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가입 하고,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·조회한 경우
마케팅동의 (연 0.5%)	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·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

(주1) 급여 인정 기준

-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
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
- ② 회사에 의한 '급여코드'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
- ③ 손님이 '급여일'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
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
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
- (주2) 주거라이체 인정기준: 하나카드 결제(신용/체크),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,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

제 10 조 해지방법

이 예금은 지방자치단체(‘운영지침’에서 명시한 기관등)에 해지 신청 후,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 가능합니다.

제 11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

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.

제 12 조 일부해지

- ①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일이전 1회까지 입금건별 균등계산^(주3) 방식에 따라 분할해지 가능하며,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.
- (주3) 입금건별균등계산방식 : 일부해지하는 금액을 입금건별로 균등하게 계산한 금액으로 출금하는 방식

제 13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

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,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1. 당행자동화기기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(월 10회면제)
2.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(월 10회면제)

※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

※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

부 칙

1. 이 특약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